

제2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7. 18)

조례안 심사 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	2
2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안 --	7
3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6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7	거창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8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7. 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7. 16.

2. 개정이유

- 법적인 근거 없이 조례상의 행정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모두 발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조례의 별지 서식 중에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사항을 모두 발취하여 일괄개정함 (별첨)
- 15개부서 33개조례 75건

4.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 법적인 근거 없이 조례상의 행정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모두 발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생년월일”로 일괄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별표]

소 관	조 례 명	별 지 서 식		개정 내용
기 획 감 사 실	보증채무 관리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채무보증신청서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 월일”로 개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서	
주 민 생 활 지 원 실	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조례	별지 제1호	마을공동이용시설물 정비 지원신청서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별지 서식	삶의 쉼터 사용허가 신청서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통지서 본인일부부담금 수급자 관리대장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서 사실확인조사서 의로운 군민 인정결과통보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별지 제2호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별지 제1호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신청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 효도수당 지급대장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별지 서식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	
장수수당 지급조례	별지 제1호	장수 수당 지급 신청서		
행 정 과	주민투표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인 서명부 주민투표 청구서 이의신청서	

소 관	조 례 명	별 지 서 식		개정 내용
재 무 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2호	숨은 세원 발굴 장수포상금 지급대장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 월일”로 개정
민원 봉사 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인건 상정요청서	
안전 총괄 과	지역 자율 방재 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	출입증	
경 제 과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별지 제1호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신청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	
산림 녹지 과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별지서식	가로수사업 승인신청서	
녹 색 환 경 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과태료납부 독촉장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농작물피해 정밀조사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농작물피해 보상금청구서 인명피해 발생신고서 인명피해 지원금청구서	
건 설 과	수리계 관리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증	
	부실공사 방지조례	별지 제3호	부실공사 신고서	

소 관	조 례 명	별 지 서 식		개정 내용
도 시 건 축 과	건축조례	별지 제1호	건축완화신청서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 월일”로 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 별지 제16호 별지 제17호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안전점검 검사원증 안전점검 검사서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옥외광고업 종사자등 교육위탁자정산장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현수막 자정개사대 관리업무 위탁자정서 현수막 자정개사대 관리업무 위탁자정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거부·중지 통보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종결 통보서	
의회 사무과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농 업 기 술 센 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별지 제1호	전시물 기증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 추천서 보조금 청구서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신청서	
상하 수도 사업소	상수도급수조례	별지 제1호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체육 청소 소년 사업소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별표 1	청소년지도위원증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7. 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7. 16.

2. 폐지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공포, 2013. 12. 12시행)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였고,
-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2013. 12. 11제정, 2013. 12. 12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가 적합·타당하고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7. 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7. 16.

2. 개정이유

- 민선 6기 출범에 맞추어 창조도시 완성을 위한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부서명칭변경 및 부서장의 사무를 조정함(안 제3조, 제7조)

○ 명칭변경

- 창조정책과 ⇒ 창조산업과
- 경제과 ⇒ 승강기경제과

○ 분장사무 조정

- 창조정책과
 - 도시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사항 → 도시건축과로 이관
 - 승강기밸리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승강기경제과로 이관
 -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 도시건축과로 이관
 - 창조도시 완성에 관한 문화사업에 관한사항 : 분장사무 신설
- 승강기경제과
 - 에너지자립도시에 관한 사항 → 창조산업과로 이관

- 농업기술센터
-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 분장사무 신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민선 6기 출범에 맞추어 창조도시 완성을 위한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7. 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7. 16

2.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기관별 정원조정
 - 현행 : 668명{본청292명, 의회14명, 직속기관125명(농업기술센터62 보건소 63), 사업소51명, 읍38명, 면148명}
 - 조정 : 668명{본청291명, 의회14명, 직속기관128명(농업기술센터65, 보건소63), 사업소51명, 읍37명, 면147명}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현행 : 596명{본청275명, 의회11명, 직속기관91명(농업기술센터30 보건소61), 사업소45명, 읍37명, 면137명}
 - 조정 : 596명{본청274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농업기술센터33, 보건소61), 사업소45명, 읍36명, 면136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7. 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7. 16.

2. 개정이유

- 전국 3,487개 읍·면·동 중 1%인 31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14년 7월 31일로 한정된 부칙상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군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를 해당 읍·면에 두어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선정위원회 설치 기관 변경(안 제9조제1항)
 - (종전) 군
 - (변경) 해당 읍·면
- 나. 조례 제2147호(제정 2013.8.14.)의 부칙 제2조 중 유효기간 삭제함
 - (종전)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북상면에 한정하여 2014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변경)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북상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국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14년 7월 31일로 한정된 부칙상 유효 기간을 삭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군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를 해당 읍·면에 두어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7. 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7. 16.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2152호, 2014.1.1)개정·시행됨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목 및 세율체계 변경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 (안 제9조, 제10조)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체계 반영 (안 제11조)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상위법 조항 변경 (안 제24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2152호, 2014.1.1)개정·시행됨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목 및 세율체계 변경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7. 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7. 16.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2152호, 2014.1.1)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일부 용어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목 및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변경
(안 제2조, 제8조, 제9조)
-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변경(안 제1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2152호, 2014.1.1)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일부 용어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7. 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7. 16.

2. 개정이유

-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군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문화센터 소재지 새주소 변경(안 제2조)
 - (현행) 김천리 216-5번지 ⇒ (변경) 수남로 2181
- 문화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삭제하고 조 전부개정(안 제7조)
- 손해보험의 가입에 관한 규정 삭제함(안 제2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명시사항이므로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순화함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자 ⇒ 사람, 기타 ⇒ 그 밖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군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